

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결국 2018년 세법개정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3년간 연속해서 공제한다는 규정이며 일반기업의 경우 2년간 연속해서 공제한다)

1.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위 공제율 ① ②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2. 제1호 외의 경우 : 위 공제율 ②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 (4) 상시근로자

시행령 제23 ⑩에 의하여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종전에 시행되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와 동일하다 )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5) 청년 정규직 근로자 및 장애인

1. 15세 이상 29세 (창업중소기업 감면에서는 34세)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6) 사후관리 ( 조특법 제29조의7 제2항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이미 공제받은 세액( 2년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가산세 및 가산이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 납부세액의 계산(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 )**

아래와 같이 계산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 ( 이월공제액 포함 )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b>①1년 이내 감소하는 경우</b>	<p><b>1) 상시근로자 감소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등 감소인원이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초과시 : 그 초과인원 × 청년등과 상시근로자 공제액 차이 +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 청년등 공제액</li> <li>※ 그 초과인원 : 청년등 감소한 인원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 청년등 감소한 인원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청년등 증가한 인원을 한도로 한다)</li> <li>- 그 밖의 경우 : 청년등과 그 외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 각각 해당 공제액 ( 청년등과 상시근로자 각각 상시근로자 감소인원을 한도로 한다 )</li> </ul> <p><b>2) 상시근로자 감소하지 않았으나 청년등이 감소시 :</b></p> <p style="padding-left: 20px;">청년등 감소인원 × 청년등과 상시근로자 공제액 차이 (청년등 감소인원 : 최초 공제받은 연도의 청년등 증가인원을 한도로 한다)</p>
<b>②2년차 기 간중 감소 하는 경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과 같은 방법으로 추정하되, 2년이상 공제 받은 경우 2년간 공제받은 금액을 추정한다.</li> <li>- ①에 따른 既추징세액은 차감</li> </ul>

※ 사후관리에 의한 감소인원 계산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 (29세이하)이었던 이후 과세 연도에도 청년 (29세이하)으로 보고 감소인원을 계산한다.

**나.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계산 사례 ( 2019년 귀속 .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기준 )**

구분	2017	2018	※1. 2019	※2. 2019	※3. 2019	※4. 2019
상시근로자 수	3	8	11 증가3	6 감소2	5 감소3	10 증가2
청년근로자 수	2	5	9 증가4	1 감소4	4 감소1	2 감소3

( 청년근로자의 증가는 상시근로자 증가를 한도로 우선 적용한다. )

1. 2018년 고용증대세액공제 : 청년 3명 × 1100만원 + 상시 2명 × 700만원 = 4,700만원 공제
2. 2019년 고용증대세액공제 증감 사례별 계산
  - ※1 청년 증가 3명 × 1100만원 = 3,300만원 공제 (그리고 2018년 공제 4700만원 추가 공제)
  - ※2 청년 초과 감소 1명×(1100-700만원) + 상시근로자감소 2명×1100만원 = 2,600만원 추정
  - ※3 청년 감소 1명 × 1100만원 + 상시 감소 2명 × 700만원 = 2,500만원 추정
  - ※4 청년 감소 3명 × (1100-700만원 ) = 1200만원 추정

상시 증가2명 × 700만원 = 1400만원 공제 (이 경우 추정과 공제가 동시발생 합니다)

( 사후관리 추정세액은 감소된 연도의 인원이 당초 공제받을 당시의 인원이라고 간주하고 계산한 공제받을 세액과, 당초 실제 공제세액과의 차이금액이 추가납부세액으로 보입니다 위의 계산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고 세법에 의한 개인적인 계산입니다 )

**3. 법인세 신고서 작성**

법인세 신고서식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8호서식(을)]”에 기록하고 ⑮ 추가납부세액 합계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⑬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에 기록하여 법인세로서 납부한다.